

의안번호	2208182
의 퇴 인	박민규의원
회 답 일	2025.2.18.
추 계 번호	25D088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68억 800만원, 2030년 879억 3,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892억 2,300만원(연평균 778억 4,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퇴직수당 지급률 상향 조정 (안 제62조제2항)	66,808	74,057	77,222	83,204	87,932	389,223	77,845

주: 1. 퇴직수당 지급률 상향 조정(안 제62조제2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전제 및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현행법에 따른 퇴직수당과 개정안에 따른 퇴직수당을 산출한 후 그 차이를 계산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2조제2항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재직기간의 상한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현행법에서 급여계산 시 재직기간의 상한은 3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 <table> <tr> <th rowspan="3">재직기간</th> <th colspan="2">퇴직수당 지급률</th> </tr> <tr> <th rowspan="2">종전기간 (2009.12.31.이전)</th> <th>이후기간 (2010.1.1.이후)</th> </tr> <tr> <th>현행법</th> <th>개정안</th> </tr> <tr> <td>1년 이상~5년 미만</td> <td>10%</td> <td>6.50%</td> <td rowspan="5">39%</td> </tr> <tr> <td>5년 이상~10년 미만</td> <td>35%</td> <td>22.75%</td> </tr> <tr> <td>10년 이상~15년 미만</td> <td>45%</td> <td>29.25%</td> </tr> <tr> <td>15년 이상~20년 미만</td> <td>55%</td> <td>32.50%</td> </tr> <tr> <td>20년 이상</td> <td>60%</td> <td>39.00%</td> </tr> </table>	재직기간	퇴직수당 지급률		종전기간 (2009.12.31.이전)	이후기간 (2010.1.1.이후)	현행법	개정안	1년 이상~5년 미만	10%	6.50%	39%	5년 이상~10년 미만	35%	22.75%	10년 이상~15년 미만	45%	29.25%	15년 이상~20년 미만	55%	32.50%	20년 이상	60%	39.00%	의무규정
		재직기간		퇴직수당 지급률																						
				종전기간 (2009.12.31.이전)	이후기간 (2010.1.1.이후)																					
			현행법		개정안																					
		1년 이상~5년 미만	10%	6.50%	39%																					
		5년 이상~10년 미만	35%	22.75%																						
		10년 이상~15년 미만	45%	29.25%																						
		15년 이상~20년 미만	55%	32.50%																						
		20년 이상	60%	39.0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2조제2항 (퇴직수당)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전제 및 모형을 활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현행법에 따른 퇴직수당과 개정안에 따른 퇴직수당을 산출한 후 그 차이를 계산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 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법에 따른 퇴직수당과 개정안에 따른 퇴직수당의 차이
-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의 직종별·성별 퇴직자 수, 개정안과 현행법에 따른 직종별·성별 평균 퇴직수당의 차액을 곱하여 산출
 - (퇴직자 수) 2026년 61,804명, 2030년 60,788명으로 추정
 - － 국회예산정책처의 공무원연금 재정전망모형을 활용한 결과로 2023년 결산기준 재직자 수에 기초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퇴직률 등을 적용하여 추계

[표 2] 퇴직자 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일반직	남성	34,664	33,750	32,760	33,026	32,305
	여성	14,178	15,589	16,244	16,680	15,890
교육직	남성	4,469	4,358	3,869	3,835	3,571
	여성	8,493	8,619	8,723	8,884	9,022
합계		61,804	62,316	61,596	62,425	60,78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평균 퇴직수당의 차액) 2026년 44~156만원, 2030년 45~192만원으로 추정
 - － 평균 퇴직수당의 차액은 개정안과 현행법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후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

[표 3] 평균 퇴직수당의 차액 추정: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일반직	남성	111	131	140	147	158
	여성	156	149	155	171	192
교육직	남성	44	47	56	58	65
	여성	50	53	46	44	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668억 800만원, 2030년 879억 3,2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892억 2,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퇴직자수 (A, 단위:명)	일반직	남성	34,664	33,750	32,760	33,026	32,305	—
		여성	14,178	15,589	16,244	16,680	15,890	—
	교육직	남성	4,469	4,358	3,869	3,835	3,571	—
		여성	8,493	8,619	8,723	8,884	9,022	—
평균 퇴직수당 차액 (B, 단위:만원)	일반직	남성	111	131	140	147	158	—
		여성	156	149	155	171	192	—
	교육직	남성	44	47	56	58	65	—
		여성	50	53	46	44	45	—
추가재정소요 (A×B, 단위: 백만원)	일반직	남성	38,477	44,213	45,864	48,548	51,042	228,144
		여성	22,118	23,228	25,178	28,523	30,509	129,556
	교육직	남성	1,966	2,048	2,167	2,224	2,321	10,726
		여성	4,247	4,568	4,013	3,909	4,060	20,797
	합계		66,808	74,057	77,222	83,204	87,932	389,2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공무원연금 재정전망 전제 및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현행법에 따른 퇴직수당과 개정안에 따른 퇴직수당을 산출한 후 그 차이를 계산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